

부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3352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주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변론 종결 2021. 1. 15.

판결 선고 2021. 2.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1.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22686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26. 'C은 원고에게 22,025,451원 및 그중 17,998,461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81744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29. 'C은 원고에게 9,020,865원 및 그 중 6,994,664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4983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19. 'C은 원고에게 11,542,413원 및 그 중 9,529,618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87986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8. 'C은 원고에게 29,042,05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5)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08297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9. 27. 'C은 원고에게 22,387,752원 및 그 중 14,429,893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9.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피고, G, C이 있는데, E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20. 1.30.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분할협의 에 따라 2020.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각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11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을 10여 년간 부양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민법 제1008조의 ②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C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2020.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은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벚꽃조 스라브가 2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10평 6호 8차, 2층 110평 2호 5차, 지하실 27평 6호 8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266㎡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3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벚꽃조 스라브가 13평4차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6600분의 1778
 2. 소유권대지권 34700분의 2319 원.